



보도 일시	2022. 7.10.(일) 12:00 2022. 7. 11.(월) 조간	배포 일시	2022. 7. 10.(일) 12:00
담당 부서	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기업지원부	책임자	부 장 정혜영 (031-728-7056)
		담당자	대 리 권다예 (031-728-7158)

올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는 신규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!

- 올해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가 대상 -

- 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(이사장 조향현, 이하 ‘공단’)은 ‘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’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.
- ☐ ‘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’은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,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.
- 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,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, 33명~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.
- ☐ 지원요건에 맞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~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

〈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내용〉

구분	지급 단가(월)	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(단가x6개월)	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(단가x1년)
경증남성	30만원	180만원	360만원
경증여성	45만원	270만원	540만원
중증남성	60만원	360만원	720만원
중증여성	80만원	480만원	960만원

* 단, 장애인근로자의 월 임금의 60%와 비교 단가를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 지원

□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, e-신고시스템 (www.esingo.or.kr)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며,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(www.kead.or.kr)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(1588-1519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*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→ 공지사항 → ‘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’ 검색

